

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3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3. 13

다. 상정일자 : 제 11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 1차 총무위원회(2003. 3. 20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조동규 재무과장)

가. 제안사유

○ 지방재정법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구평동 복지회관 신축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(m ²)	구조	시설개요	소요예산
구 평 동 복지회관 신 축	건물 신축	구평동 125-23, 125-39	1,324 (400평)	철 근 콘크리트	• 지상5층- 주차장,관리실, 어린이집,어린이 놀이공간,노인정, 회의실,문화교실, 생활체육관등	1,555,000

○ 다대2동 어린이집 신축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(m ²)	구조	시설개요	소요예산
다대2동 어린이집 신 축	건물 신축	다대동 63-4 63-19 120-28, 120-55 1435-3	661 (200평)	철 근 콘크리트	• 지상2층- 어린이집, 어린이놀이 시설등	572,420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002. 10우리구 재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받아 2002. 11월에 본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건물 신축할 사유가 발생되어 본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취득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,
- 구평동 복지회관 신축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부지에 구평동 지역 주민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특별지원금액이 1,995백만원 남아 있어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
- 다대2동 어린이집 신축건은 행자부의 시범사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추진되는 사업으로, 총소요예산 950백만원중 예산확보액이 800백만원 (국비 5억, 시비 15억, 구비 15억)이며 이중 토지매입비 380백만원을 제외하면 1 억5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부족한 금액은 1회추경시 확보 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으나,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후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.
- 금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, 구청장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취득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의 비협조로 종합적인 계획없이 그때그때 변경승인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것이며,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은 각 실과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된후 처리되어야 할것임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론 요지 : 생 략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